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899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임원의 인건비에 대한 손금산입 요건 강화(차규근의원안) ..	2

I. 개요

1.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89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차규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11.

(3) 회 부 일 : 2025. 9.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임원이 여러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각 법인마다 인건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받는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만 적정한 금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임원의 인건비에 대한 손금산입 요건 강화(차규근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제26조) ○ 손금불산입 대상: 다음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 인건비 - 복리후생비 -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 그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u><신 설></u> <u><신 설></u>	□ 임원의 인건비에 대한 손금산입 요건 강화 ○ 손금불산입 대상: (현행과 같음) ○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한 손금산입 요건 -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로서 그 지급액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 임원이 실질적인 임무수행을 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① 해당 법인에서의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② 이사회 등 주요 회의 참석횟수 및 의사결정 기여도 ③ 해당 법인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기여도

현 행	개정안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급액의 적정성 판단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차규근의원안 2025. 9. 11. 발의(의안번호 12899)

□ 개정안은 내국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한 손금산입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임원에 대한 인건비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로서 그 지급액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한편, 근무일수 및 시간, 주요 회의 참석횟수 및 의사결정 기여도, 전문성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 여부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열거하려는 것임.

□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손비)의 금액으로 하고,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의미함.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인건비란 ① 근로를 제공한 임원 및 직원에게 그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료, 봉급, 임금, 수당 등과 같은 보수(일반급여), ②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③ 임원 및 직원이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포괄하는 것임²⁾.

이때 임원이란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 감사 및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가리킴.³⁾ 단,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⁴⁾

□ 한편, 법인이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상여금 등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되, 「법인세법」 제26조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⁵⁾

2) 김완석·황남석, '법인세법론', 삼일인포마인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4) 「법인세 집행기준」 26-43-2: 근로자의 구분

구체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임원에 대한 과다 상여금, 지배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과다보수,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로서 해당 보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임원퇴직급여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⁶⁾

5)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병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제2조제8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8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

□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만 적정한 금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기업이 인건비 명목으로 과다한 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한 과세를 가능하게 하고 부당한 조세회피 시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특정인에게 형식적인 보수를 지급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려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할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2조제8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는 일부 법인과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해 인건비를 지출한 일반 기업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됨.

특히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법령⁷⁾에 따르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판례 역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

7)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8)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

둘째, 개정안은 이사회 등 주요회의 의사결정 기여도, 해당 법인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기여도 등을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판단기준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주관적인 평가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법률에 명시하기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

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급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급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2023-누-56035, 대법원-2024-두-56979)